



산업 Issue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7일 | 글로벌 리서치

미국 태양광

[Section 232 시사점] 명단에 없는게 명단

모든 밸류체인에 도입된 MIP(최저수입가격)와 증가세 15%

8월 6일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대한 Section 232가 최종 확정되었다. 2025년 7월 1일 조사 개시 이후 약 2차례 지연된 후의 발표이다. 결과적으로 2026년 12월 4일부터는 소비를 위해 새로 들어오는 제품뿐 아니라 기존 창고 제품이 사용될 경우에도 최저수입가격(MIP; Minimum Import Prices)이 적용된다. 덤핑성 판매를 금지해 미국 업체들이 글로벌 가격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시장을 만들고 미국 내에서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 생산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IP는 (1) 폴리실리콘 21달러/kg, (2) 잉곳 및 웨이퍼 100달러/kg, (3) 셀 0.22달러/W, (4) 모듈 0.38달러/W로 태양광 모든 밸류체인에 적용되었다. 만약 수입 물품의 신고가액이 MIP보다 낮은 경우 해당 수입 물품에는 신고가액과 MIP의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 관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별개로 15%의 증가세(Ad Valorem)가 이중으로 부담된다. 이를 전 로이터가 보도했던 방향(가격하한+관세)과 동일하나 MIP의 기준 가격이 현재 가격 대비 약 3~4배 높고 신규 수입품뿐 아니라 기존 재고에도 MIP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로 평가한다.

한국, 일본, 대만, EU 등은 세율 합계 최대 15%

미국은 이번 Section 232 최종에서 중국을 직접 겨냥해서 배제하기보다는 우방국들에게 예외적으로 혜택 조항을 두어 중국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EU 회원국은 Section 232 관세와 기존 HTSUS 관세율의 합계를 15%로 제한해 원래 관세를 내고 있었으면 새로운 관세는 그만큼 덜 걷는 방식이다. 영국은 기준을 10%로 한번 더 완화했다. 온쇼어링 대상 제품들에 대해서는 Section 232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건은 2029년 1월 20일까지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다.

미국 대기 물량의 계약 촉진 시작될 것

트럼프는 취임 이후 다양한 규제를 통해 미국의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OBBBA 내에도 PFE(중국을 포함한 금지외국단체) 조항을 두어 세액공제 자격을 박탈했으며, AD/CVD를 통해 동남아를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했다. 퍼스트솔라는 7월 30일 진행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Section 232를 관망하며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Section 232 최종 발표로 계약이 촉진되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물량 1.8GW는 마감 공정을 미국 내로 들여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시현)는 2026년 8월 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